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교통위원회 김성준 의원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김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혁신 전략이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 밀집도와 교통 수요가 매우 높은 대도시로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과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인 교통 시스템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전기 · 수소 기반 친환경 모빌리티, MaaS(Mobility as a Service), 자율주행 서비스 등 미래 교통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 법률의 기본 방향을 반영하되, 서울의 도시구조 · 교통여건 · 시민 수요에 적합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조례를 제정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제1조 · 제2조)를 명확히 하여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 법률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의 책무(제3조)를 규정하였습니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개선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등이 중요하므로 이를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제4조~제6조)과 관련하여,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모빌리티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이며, 국가 법률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제8조 · 제9조)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필요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앙부처 · 공공 기관 · 민간기업 · 전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고,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며, 시민의 이동 편의 향상 · 환경 개선 · 교통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울이 글로벌 수준의 첨단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